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2030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203055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402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필성, 김솔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환

변론 종결 2021. 6. 11.

판결 선고 2021. 7. 9.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40287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을 "D"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6. 9. 2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D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6. 9. 2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아래 제2항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제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3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가 190,000,000원을 송금한 D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2016. 9. 19.

190,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그중 180,528,000원이 액면금 150,528,000원인 수표 1장과 액면금 1,000,000원인 수표 30장으로 발행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를 입찰자로 하여 입찰보증금 150,528,000원이 수표로 납부되었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라항 첫째 줄부터 2째 줄(제3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마지막 줄) "H 주식회사로"를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인정근거](제4쪽 12째 줄부터 13째 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6, 23, 37, 42호증, 을 제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가항 3째 줄(제4쪽 아래에서 4째 줄) "구하는"을 "구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나.의 2)항 10째 줄(제6쪽 첫째 줄) "표현하는 등" 부분을 "표현하고, 고소장에 첨부한 개인조사보고서에 D 명의의 부동산 현황과 신용거래정보에 관한 간략한 사항만을 기재하였을 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3.나.3)나.의 (1)항 첫째 줄(제9쪽 6째 줄) "가재와"를 "기재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3.나.3)나.의 (1)항 아래에서 3째 줄(제10쪽 9째 줄) "무상 공여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분을 "무상 공여하고, D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무상 공여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로 고쳐 쓴다.

2. 추가 내지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D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2016. 9. 19. 인출된 190,000,000원 중 위 입찰보증금 150,52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472,000원에 관해서도 D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 39,472,000원 부분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서울강동우체국, 서울잠실우체국, 서울천호동우체국, N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더라도, 위 금액에서 발행된 액면금 1,000,000원인 수표 30장(30,000,000원)의 구체적인 용처를 알기 어렵고, 위 수표금 중 6,595,000원 상당이 O의 예금 계좌로, 400,000원이 P의 예금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D이 2016. 9. 28.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20,000,000원 역시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나.4)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에 더하여, 갑 제46호증, 을 제42,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D은 부자지간으로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5. 1. 28.부터 2016. 3. 30.까지 피고 명의의 J은행 예금 계좌에서 피고와 D이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가 송금되고, 2015. 2. 5.부터 2015. 8. 9.까지는 Q의 건강보험료가 송금되기도 하는 등 위 예금 계좌의 금원이 D과 Q을 위해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20,000,000원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D에게 2016. 9. 14. ~ 15. 지급한 합계 190,000,000원과 2016. 9. 28. 지급한 20,000,000원은 모두 단순 대여금이 아닌 인천 R 일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도 그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변제기도 2017. 3. 14.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일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장래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되고 사해행위 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또,

기초사실 및 갑 제2, 3, 33,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D이 2016. 9. 14.경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원고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2016. 9. 14. ~ 15.경 D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D이 2016. 9. 17. 및 2016. 9. 20. 원고에게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차용증에 차용금 200,000,000원 외에 수익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반환채권이 2016. 9. 19.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자는 D 또는 L를 비롯한 이 사건 경매채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입찰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23, 35, 3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이 피고를 입찰자로 하여 매각대금 1,200,500,00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입찰 당시 D의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입찰보증금 150,528,000원이 납부된 사실, 피고가 이후 위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경락 과정에서 위 입찰보증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 이후 배당절차에서 L를 비롯한 이 사건 경매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그 입찰보증금이 위 경매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 오히려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L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그 약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D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D에게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13, 16호증, 을 제5, 6, 18, 31, 32,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Q은 2012. 4. 16.경 S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S조합, 채무자 Q,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S조합은 2015. 4. 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E)을 하여, 2015. 4. 8.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③ L는 2015. 5. 15.경 S조합로부터 Q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④ D은 2016. 5. 26.경 L의 실질적 운영자인 T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매입찰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1. 2016. 5. 30. D은 L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액을 11억 원에 매입키로 약정하고 채권은 12억을 사용하여 입찰에 응한다.

3. 12억 응찰 및 잔금 납부 후 배당시 12억 중 약정금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L가 D에게 즉시 반환한다.

4.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 75,264,000원은 D이 준비하여야 하나 준비가 안 된 이유로 아래 5번항의 약정을 삽입한다.

5. L는 김포시 U 토지 전부(소유자 V)를 대출을 일으키는 데 협조한다.

(주)W에서 1억 대출을 발생하여 5. 26. 1천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4백만 원은 4월 경매기일 연기시 미지급된 이자분을 L에 지급하며 4,600만 원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6. 8. 4천만 원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9,264,000원은 L가 준비하여 입찰보증금으로 D에게 차용해주며 이 금액은 위 3항 11억 공제할 때 함께 돌려받는다.

⑤ D은 자신이 운영하던 H를 입찰자로 하여 2016. 5. 30. 입찰금액 1,200,000,000원, 입찰보증금 75,264,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하였고, 2016. 6. 3. H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H는 법원이 지정한 잔금 납부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재매각을 명하였다.

⑥ T는 2016. 9. 18.경 D에게 "지난 번 입찰보증금 4천만 원은 배당시 돌려드리고 내일 응찰금액은

12억으로 쓰시되 채권 매입금액은 십억육천오백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이 이에 응하였다.

⑦ D은 피고를 입찰자로 하여 2016. 9. 19. 입찰금액 1,200,500,000원, 입찰보증금 150,528,000원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하였고, 2016. 9. 26. 피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⑧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⑨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L 측(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Z 포함)은 합계 1,261,859,138원을 배당받았다. D과 L는 D이 최초 입찰시 L 측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L가 경매입찰이행 약정 등에 따라 D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서로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D이 실제로 L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은 없다.

이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L와 사이에 일종의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경매입찰약정 체결 경위, 입찰보증금 납부, 피고의 소유권 취득 및 정산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D이 처인 Q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여하게 되었고 L와의 채권채무 관계도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점, 2016. 9. 19.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피고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 등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된 점, 이후 D과 L 사이에 채권채무의 정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없고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L와의 관계만 정리되기에 이른 점, 당시 피고 또는 L가 D이 자신의 자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등 그 경제사정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나아가, D이 당시 인천 R 일대 AA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D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더라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고 예상할 수 없어,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증여는 위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또는 그 사업을 위한 자금융통 등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 진행 당시 D이 H를 통하여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진행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위 2016. 6. 3.자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D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판사지영난

판사오영상

판사이재혁